

# - 2024년 수원문화재단 정기감사 - 수익계약 체결 실태 감사 결과보고

- 재단 수익계약 전반에 대한 체결 실태 감사를 실시, 수익계약 체결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고자 시행한 감사 결과 보고 임.

## I. 감사개요

- 감사종류 : 정기감사
- 감사기간 : 2024. 11. 20.(수) ~ 2025. 1. 31.(수)
- 감사대상 : 재단 8개 부서의 10,000천원 이상의 수익계약 체결 건
- 감사범위 : 2023. 1. 1. ~ 2024. 12. 31.(계약 체결일 기준)
- 감사장소 : 기획경영부 사무실 내
- 감사방법 : 서면감사(시스템 자료 및 서류감사 병행)
- 감사반 : 감사관 등 4명
- 감사중점사항
  -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규정 준수 여부
  - 관외업체, 특정업체 대상 반복 수익계약 실태 점검
  - 원가 계산 및 변경 계약 적정성
  - 분할 수익계약(시기, 장소 등) 여부
  - 계약업체 자격 적정성(보유면허, 부정당업체, 수익계약 배제대상 등)
  - 계약 법령 및 지침 준수 실태 등

## II. 감사결과

### ○ 총평

- 이번 감사는 정기감사로 감사인원을 최소화하여 **2023.1.1.~ 2024.12.31. 범위** 내 8개 부서의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점검하며,
- 적발위주의 감사를 지양하고, 적법한 행정 및 계약 처리 절차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추진하였음.
- 감사결과, 8개부서에서는 계약체결시 관련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개인 비위 발생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업무 편의, 관행 또는 관련 법령과 지침 미숙지**로 발생한 행위가 일부 지적되어 총 3건(개선) 조치하였음.
-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대상 회계 관련 실무교육 및 사례중심 개선 교육 등 적절한 업무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안내·관리를 관련부서에 요구하고자 함.

### ○ 처분지시사항 목록

(단위: 건, 원, 명)

처분번호	내용	합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비고
	합계	3	-	-	3	-	-	-
1	연간계약 체결시 유사동일 과업의 증가	1	-	-	1	-	-	-
2	공연(출연) 계약과 용역 계약의 불명확	1	-	-	1	-	-	-
3	계약 전 일상감사 미이행	1	-	-	1	-	-	-

※ 처분요구의 경우 감사원에서 배포한 자체평가 매뉴얼 반영

### Ⅲ. 세부 지적사항

#### [사례 ①] 연간계약 체결시 유사·동일 과업의 증가

- ▶ 연간계약이 전년 대비 증가한 부분을 살펴보니, 시설 운영에 관한 계약이 대부분이었으며, 계약 분류별로 보았을 때 동일·유사한 과업이 시설별로 체결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향후 시설통합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여 동일유사 과업을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 조치할 사항

시설통합운영방안 등을 모색하여 동일 유사 과업 계약에 대한 효율적 운용 방안 마련하도록 **개선**

#### [사례 ②] 공연(출연) 계약과 용역 계약의 불명확

- ▶ 특정부서에서는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특정인기술·용역이라는 명목하에 2천2백만원이상의 공연이나 출연 계약을 1인견적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 있으나 계획서나 계약체결 요청 공문 상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공연단체에 대한 소개가 미흡하거나 누락되어 공연에 대한 효력을 확인할 수 없는바,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등록 여부 또는 해당단체의 소속사나 기획사 여부, 홈페이지나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하려는 공연의 실연 단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철저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계법령등을 확인하여 공연이나 출연단체와의 공연 계약이 아닌 행사 운영 업체와 공연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 이외에도 공연이나 출연계약시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제정된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를 따르고 있다고 하였으나, 계약서를 살펴보니 공연이용 허락 범위와 성희롱 등 피해구제 조치 항목 등이 누락되어 계약서 보완 조치가 필요함

##### ⇒ 조치할 사항

향후 공연에 대한 효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공연과 행사 용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

#### [사례 ③] 계약 전 일상감사 미이뤄

-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 수의계약과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수의 계약 중 일상감사 대상 계약임에도 계약 체결 전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계약 4건이 확인되어, 향후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 조치할 사항

공연 계약 등을 불문하고 향후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일 경우 감사부서에 일상감사 의뢰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

---

## IV. 향후추진계획

---

- 관련부서 대상 처분요구서 및 유의사항 전달
- 처분사항에 의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 처리
- 향후 회계 교육시 관련 내용 포함하여 교육 시행